

13.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건축허가 등 각종 인·허가 처리 시 타 법령에 따라 기 결정·승인·인가된 사항을 준용함
14. 지정지역 평택 포승(BIX)지구 및 현덕 지구에 1~13의 항목의 개발계획은 변경 없음
15. 관련도서 열람방법
-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<http://luris.molit.go.kr/>)에서 열람
  - 『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』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(031-8008-8619), 시흥시 경제자유구역과(031-310-6972)에서 열람 가능

### ●보건복지부고시제2020-115호

「의료법」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「보건의료 용어표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51호, 2018.3.30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0년 6월 11일

보건복지부장관

「보건의료 용어표준」 일부개정

보건의료 용어표준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.

- 붙임 : 보건의료 용어표준[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시스템(<http://www.hins.or.kr>) 게시]

부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●환경부고시제2020-120호

전국 생태·자연도(生態·自然圖) 일부 수정·보완

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·보완된 생태·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6월 11일

환경부장관

1. 대상지역 :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713-14 일대 등 2개소
2. 근거법령 :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
3. 생태·자연도 수정·보완 내용

대상지역	도엽	생태·자연도 등급		비고
		당초 고시	수정·보완	
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713-14 일대	동래 359131	1등급	3등급	식생
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산217 일원	삼호 359092	1등급	2, 3등급	식생

4. 생태·자연도 수정·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(환경공간정보서비스, <http://egis.me.go.kr>)에 게재

부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등(준비서 포함)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.